

2021년 12월

식품 원산지 규정

판매자용 안내서



차례



머리말	2
배경	2
어떤 유형의 식품이 규정 적용 대상인가?	3
식품 ‘품목’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3
‘과일 또는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나?	4
어떤 것이 ‘신선’ 식품인가?	4
‘최소 가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5
‘염지 돼지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5
규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6
어떤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7
원산지 정보 고지 방법	8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8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함	8
규제 식품 품목과의 연결성이 명확함	10
일반 고지 요건의 변형	11
제12조: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의 추가 정보	11
제13조: 매장 간 원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의 대체 정보	11
제14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12
제15조: 육류 또는 염지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12
일반 고지 요건의 예외	13
상사위원회 강제 집행	14
규정 저촉 시 어떻게 되나?	14
원산지 국가에 대한 거짓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표방	14
기타 정보	15
민원 제기	15
추가 정보	15
자가 확인: 내가 규정 적용 대상인가?	16

머리말

이러한 지침은 소비자 정보 표준(식품 원산지) 규정 2021에 따라 특정 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판매자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비자 정보 표준(식품 원산지) 규정 2021(이하 ‘규정’)이 2021년 5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규정은 특정 식품에 대한 원산지 고지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규정 적용 대상인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 제의하는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 뒷부분에 나오는 자가 확인 질문지를 사용하면 귀하가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규정에 관한 일반 지침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모든 측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행 기관으로서 상사위원회는 개별 사업체에 법률 조언을 하거나 특정 상황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법원만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에 관한 구체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계 협회도 유용한 정보를 얻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배경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가 특정 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알아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규제 대상인 신선/해동/냉동 식품 품목에 적용됩니다.

→ 신선/해동 식품은 2022년 2월 12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냉동 식품은 2023년 5월 12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에는 원산지 고지가 필요한 식품의 유형, 고지 방법,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사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어떤 유형의 식품이 규정 적용 대상인가?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 품목을 '규제 식품 품목'이라고 합니다. 제5조 (2)항은 규제 식품 품목인 식품 유형을 명시합니다.

→ 다음과 같은 과일, 채소, 육류, 어류, 조개류

- 단 한 가지 종류이고
- 신선, 해동(해동만 했을 뿐이지 신선함), 냉동 상태이면서
-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것

→ 염지 돼지고기

위의 어느 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식품(예: 계란, 유제품)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식품의 설명에 쓰이는 일부 용어는 규정에서 추가로 더 정의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몇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5조 (2)항 (a)호의 '한 가지 종류' 기준을 충족하는 규제 식품 품목

사과, 양배추, 소고기, 도미, 홍합 - 날개로나 한 가지 종류의 식품 품목만 든 포장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5조 (2)항 (a)호의 '한 가지 종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 식품 품목

냉동 완두콩과 옥수수가 혼합된 봉지, 소고기 스테이크와 양갈비가 둘 다 들어 있는 고기 팩, 허브/마늘/양파가 든 미트볼, 청포도와 적포도가 혼합된 용기

식품 '품목'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품목'이라는 단어는 제4조에 정의된 용어이며, 판매하거나 판매 제의 또는 광고를 하는 식품의 '각 개별 단위 또는 포장'을 의미합니다.

'품목'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중량이나 조각(예: 수박)으로 팔리는 각 날개 단위의 식품

→ 여러 조각의 식품으로 구성된 패키지(예: 완두콩 패키지)

여러 식재료가 든 도시락이나 과일과 채소가 혼합된 상자(고객이 내용물을 지정하지 않음)를 정해진 가격으로 팔 때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이나 과일/채소 혼합 상자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자에 든 품목의 원산지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선택한 과일/채소 품목만 담아 배달하는 과일/채소 상자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과일/채소 종류의 원산지 국가를 고지해야 합니다.

‘과일 또는 채소’는 무엇을 의미하나?

‘과일 또는 채소’라는 단어는 제4조에 정의된 용어이며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나 식물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다음 품목도 제4조에서 ‘과일 또는 채소’에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 식용 버섯
- 발아 레귤
- 코코넛
- 풋강낭콩이나 완두콩
- 스노우피
- 에다마메 콩
- 누에콩
- 스위트콘

다음 품목은 제외됩니다(옆 목록에서 과일 또는 채소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 견과류
- 씨앗
- 레귤
- 곡물
- 흙에서 자라는 허브

어떤 것이 '신선' 식품인가?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존 목적이나 섭취 가능 기간 연장 목적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신선' 식품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2)항에 명시된 일부 가공 유형(냉장, 냉각, 표면 처리, 진공 밀봉, 냉동 전 데치기)을 거친 식품이라도 여전히 신선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상당히 좁게 해석될 수 있는 제6조 (1)항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판매하는 식품도 마찬가지로 신선 식품으로 간주합니다.

예

'신선' 식품

냉장 통생선, 진공 밀봉된 생마늘

제6조 (3)항에 명시된 특정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은 더 이상 신선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공에는 건조, 탈수, 절임, 훈연, 통조림, 보존(소금, 설탕 또는 기름을 사용), 익힘(냉동 전 데치기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예

'신선'하지 않은 식품

훈제 생선, 통조림 굴, 소금물에 담근 올리브, 말린 버섯, 김치, 말린 자두

'최소 가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제7조](#)는 최소 가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합니다. 최소 가공에는 예를 들어 자르기, 잘게 썰기, 얇게 썰기, 깎둑 썰기, 다지기, 갈기, 으깨기, 즈 짜기, 블렌딩, 푸레 만들기, 살 발라내기, 뼈 제거, 탈각, 껍질 벗기기, 세척, 소독 또는 방사선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 규정 적용 대상 식품은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염지 돼지고기는 항상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예

'최소한으로만 가공한' 식품

싱싱하게 얇게 썬 버섯, 껍질을 벗기고 뼈를 제거한 닭다리살, 첨가물 없이 다진 쇠고기의 패키지

단일 성분 과일 주스는 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공량 때문에 규제 식품 품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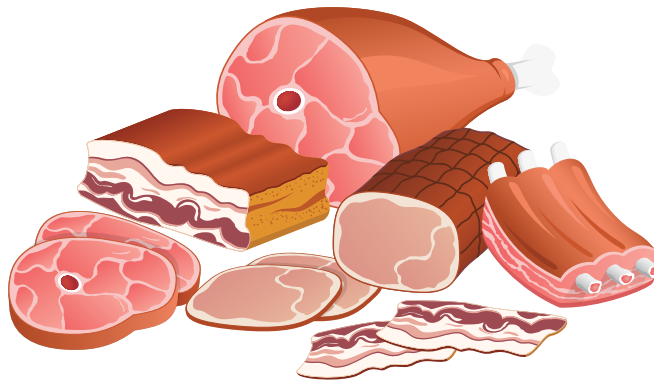
'염지 돼지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염지 돼지고기는 [제8조](#)에서 정의된 용어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가공 돼지고기 제품을 말합니다.

- 제품 중량의 최소 30%가 돼지고기 살인 베이컨이나 햄 제품
- 최소 66%(중량 기준)의 돼지고기 살에다 보존제로 소금이 든 가공 돼지고기 제품. 보존제로 아질산염이나 질산염(또는 둘 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슈토 또는 돼지고기 절임이 이러한 제품에 해당됩니다.

염지 돼지고기의 정의가 귀하의 사업체와 관련된다면 제8조의 전체 정의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염지 돼지고기가 하나의 재료로 든 품목(예: 햄을 얹은 냉동 피자 또는 베이컨 에그 파이)은 원산지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규정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규제 식품 품목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은 도매업체보다는 소매업체에 중점을 둡니다.

팁

'판매 광고'에는 실제 매장, 농산물 직판장, 웹사이트 또는 전단지에 내는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예: 광고판, 잡지, 소셜 미디어에 내는 광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조](#)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식품 품목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할 때입니다.

- 모금 행사를 할 때
-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가게, 구내 매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나 연회업체에서 즉시 소비할 목적일 때



어떤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필요한 원산지 정보는 규제 식품 품목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는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표에 나옵니다.

식품 품목 유형	고지할 원산지 정보
과일 또는 채소	재배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육류 또는 염지 돼지고기	사육 국가(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 특정 상황에서는 도축 국가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5조 를 참조하십시오.
어류	어류가 잡힌 국가(국가 어업 관할권을 보유한 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나 공해상 해양
조개류	조개류가 채취된 국가(국가 어업 관할권을 보유한 1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나 공해상 해양

위 표에 나오는 일부 단어(예: '재배', '사육', '공해', '국가 어업 관할권', '해양')는 제9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를 염두에 두고 표를 읽어야 합니다.

염지 돼지고기는 원산지 정보가 염지 국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국가를 빼고 지역이나 도시(예: 캘리포니아, 남섬)를 고지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나 해양이 아니므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럽 연합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고지가 아닙니다.

원산지 정보 고지 방법

규정은 일반적으로 규제 식품 품목의 국가나 해양을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

- 사용할 정확한 단어
- 단어의 형식 및 스타일(예: 글꼴 크기 및 스타일)
- 고지 위치

[제10조](#)는 어떻게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제10조](#)는 '영어 또는 마오리어로 된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식'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음 -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고지인지 여부는 규제 식품 품목이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문자 - 원산지 정보는 글자 형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영어 또는 마오리어 - 원산지 정보는 이 두 언어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해야 하며 규제 식품 품목의 포장에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팁

국가 지도나 국기는 '문자'가 아니므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함

[제10조](#)는 규제 식품 품목과 고지된 국가/해양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산지 정보와 함께 '재배', '사육', '채취', '포획'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원산지 정보 고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예: .co.nz)을 쓰는 것은 규제 식품 품목과 고지된 원산지 국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물리적 주소만 표시하고 기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소비자가 주소와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간 연결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팁

날개 사과를 판매하는 경우, '뉴질랜드 제품' 또는 '뉴질랜드 사과'는 규정에 부합하는 고지일 수 있습니다. 햄 제품에 대해 이와 동일한 표현(또는 '뉴질랜드산')을 사용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돼지를 사육한 국가인지, 아니면 가공만 한 곳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어장 양식 어류를 판매하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양식'은 규정에 부합하는 고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포획'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어류라는 뜻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양식 어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품'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어류와 뉴질랜드 양어장에서 기른 어류 모두에 대해 적절한 고지일 수 있습니다.

정식 국가 명칭 대신 국가 약칭을 사용해도 규정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식품이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약칭이어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가 약칭

NZ, AU 또는 AUS, US, UK

규제 식품 품목과의 연결성이 명확함

제10조에 의거, 판매자는 규제 식품 품목과 원산지 정보 간의 연결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식품 품목이 위치한 곳(예: 상점 또는 시장)에서 이것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한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식품 품목 표면부에 표시
- 포장에 표시
- 품목 옆 안내판에 표시
-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

예

규제 식품 품목이 위치한 곳에서 하는 고지로 규정에 부합하는 것:

- 날개 사과 코너 옆에 비치한 농산물 표시판에 가격과 품종, 원산지 정보를 표시
- 얇게 썬 양송이 버섯을 담은 박에 원산지 정보를 미리 인쇄
- 델리 카운터에서 포장되지 않은 햄 옆에 꼬리표를 붙이고 원산지 정보를 표시
- 미리 포장된 쇠고기에 원산지 정보를 적은 스티커 라벨을 부착

규제 식품 품목이 위치하지 **않은** 곳(예: 웹사이트 또는 전단지)에서 이것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한다면 원산지 정보를 그 제의나 광고의 일부로 넣어야 합니다.

제10조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고지하는 한,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규제 식품 품목의 표면부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팁

포장 햄의 포장 겉면이나 라벨에 '뉴질랜드 제품'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돼지를 사육한 국가인지, 아니면 햄을 가공한 국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고지의 예:



일반 고지 요건의 변형

[제11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정보가 반드시 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원산지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고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제12~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15조에 따른 요구 사항 중 일부는 복잡하며, 모든 경우에 추가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고지함에 있어 사용할 정확한 단어나 스타일, 형식 또는 고지 위치와 관련해 세세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특정 내용은 꼭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10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도 적용됩니다.

제12~15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2조: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의 추가 정보

[제12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 정보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 식품 품목의 공급 시점이 될 때면 원산지 정보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제13조: 매장 간 원산지가 서로 다를 경우의 대체 정보

[제13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정보가 판매자 매장 간에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장에서는 뉴질랜드산 딸기를 취급하고 다른 매장에서는 수입 딸기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11조 (2)항에 따른 고지 대신 대체 옵션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모든 매장에서 판매 제의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품목의 원산지 국가나 해양의 목록
-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나 해양이 특정 매장의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진술



제14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제14조는 규제 식품 품목의 원산지 정보가 자주 변경되어 그 고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 식품 품목의 예로 특정 브랜드의 완두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11조 (2)항에 따른 고지 대신 대체 옵션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의 원산지 국가나 해양의 목록
-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나 해양이 특정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진술

예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그 고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가능한 고지 예시

햄 라벨에 고지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미국 중 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기른 돼지고기로 뉴질랜드에서 생산

냉동 브로콜리 봉지에 고지 — 원산지: 중국 또는 스페인

제15조: 육류 또는 염지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의 선택적 대체 정보

제15조는 육류나 염지 돼지고기의 원산지 정보가 자주 변경되어 그 고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11조 (2)항에 따른 고지 대신 대체 옵션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품목의 동물이 도축된 국가의 목록
- 다음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진술:
 - 목록에 있는 모든 국가가 특정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 동물이 도축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 동물이 그 국가에서 사육되지 않았을지도 모름

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중 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도축된 동물로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이며 사육 국가는 도축 국가와 다를 수 있음

일반 고지 요건의 예외

[제16조](#) 및 [제17조](#)는 일반 고지 요건의 예외에 관한 것입니다.

제16조는 품목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판매 제의가 이루어지고 수락된 당시에 원산지 정보를 고지했는데 이후 이 정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품목 공급 시 다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예

제1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규제 식품 품목을 구입하고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가 고지되는 경우, 판매 제의에 따른 품목 공급 시점에 다시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는 오디오 매체를 통해 규제 식품 품목의 판매 제의나 광고를 하는 경우, 이 제의나 광고와 함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

제17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규제 식품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라디오 광고를 할 때는 원산지 정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사위원회 강제 집행

상사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상사위원회는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조사 방법과 조사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사위원회는 특정 사업체의 고지 정보가 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법원만이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저촉 시 어떻게 되나?

식품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28조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 제40조 (1B)항에 따른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조사 후 상사위원회는 법규 위반 행위(공정거래법 [제40B조](#)에 정의된)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를 발견하면:

- 공정거래법 [제40D조](#)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위반 행위 건당 최대 \$1,000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행위 건당 법인은 최대 \$30,000, 개인은 최대 \$1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에 대한 거짓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표방

상품 원산지와 관련해 거짓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표방하거나 상품과 관련해 오해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10조, 제12A조 및 제13조 (j)호에 따른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러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며, 상사위원회는 식품 원산지 규정과 함께 계속 이것을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 건당 법인은 최대 **\$600,000**, 개인은 최대 **\$200,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비단 사용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 국기 또는 기타 국가 상징 부호와 같은 심벌을 사용할 때는 원산지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인상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이 안내서는 뉴질랜드에서 특정 식품을 판매, 판매 제의 또는 광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일반 지침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모든 측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제기

잠재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상사위원회에 민원 접수:

- 전화: 0800 943 600
- 온라인 민원 신청서 작성:
[상사위원회 웹사이트](#)
- 이메일: contact@comcom.govt.nz
- 우편: Enquiries Team, Commerce
Commission, PO Box 2351,
Wellington 6140

추가 정보: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 정보 표준
\(식품 원산지\) 규정 2021](#)

뉴질랜드 법률: [공정거래법 1986](#)

[상사위원회: 원산지\(식품 라벨 표시\)](#)

[기업혁신고용부: 원산지 라벨 표시](#)

관련 업계 협회도 유용한 정보를 얻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확인: 내가 규정 적용 대상인가?

이 질문지는 귀하가 식품 원산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1 식품 품목의 판매, 판매 제의 또는 판매 광고를 하십니까?

☐ 예 ☐ 아니요

- 2 소매점(온라인 포함)에서 판매하는 식품 품목입니까?

☐ 예 ☐ 아니요

- 3 취급하시는 식품 품목이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범주 1:

3.1 단 한 가지 종류의 과일, 채소, 육류, 어류, 조개류이고

3.2 신선, 냉동, 해동(해동만 했을 뿐이지 신선함) 상태이면서

3.3 최소한으로만 가공된 것

범주 2: 염지 돼지고기

☐ 예 ☐ 아니요

- 4 식품 품목이 오직 모금 행사에서만 판매하거나,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가게, 구내 매점 또는 연회업체에서 즉시 소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요

질문 1~3에 '예'라고 답하고 질문 4에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사위원회 지침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978-1-869459-60-4

© Commerce Commission 2021

이것은 안내 지침일 뿐이며 상사위원회의 견해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최근의 법률 변경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www.comcom.govt.nz/subscribe에서 자료 구독 신청을 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사위원회가 관장하는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전화: 0800 943 600

우편: Enquiries Team, Commerce Commission, PO Box 2351, Wellington 6140

이메일: contact@comcom.govt.nz

www.comcom.govt.nz

Korean version

